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가단530588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대한체육회

1.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윤현수
2. 변호사 박선예

피 고 1. A

2. B
3. C
4. D
5. E

변 론 종 결 2022. 4. 14.

판 결 선 고 2022. 5. 12.

주 문

1.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, 2, 3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, (ㄹ)부분 지상 샌드위치판넬조 칼라강판층 1층 건물 162㎡를 철거하고, 위 (ㄴ), (ㄹ)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,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

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 C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과 같다. 피고 A, B, D, E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, 2, 3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, (ㄹ) 부분 지상 샌드위치판넬조 칼라강판층 1층 건물 162㎡를 철거하고, 위 위 (ㄴ), (ㄹ)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 F협회는 위 각 토지를 G훈련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.

나. G경기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배를 수리하던 망 H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, 2, 3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, (ㄹ) 부분 지상에 샌드위치판넬조 칼라강판층 1층 건물 162㎡(이하 ‘이 사건 작업장’이라 한다)을 무단으로 건축하여 사용하였다. 이후 I이 작업장을 양수받아 리모델링 후 사용하였다.

다. I은 2020. 3. 30. 사망하였고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,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J, 자녀 K 및 I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L의 대습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A과 L의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.

라.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 중 J, K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작업장의 철거 및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(서울중앙지방법원

2020가단5300672). 위 법원은 이 사건 작업장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J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K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장을 철거하고,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들의 주장

가)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의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속한 토지로 향후 수용될 경우 지장물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나)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을 불법으로 건축했다는 증거가 없고, 토지수용을 예정한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는 무의미하다.

다) 피고 C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하였고, 나머지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.

2) 판단

가) 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‘M지구’ 예정지에 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)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작업장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작업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었고, 피고들은 위 철거의무를 상속하였다. 위 토지가 향후 수용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

보기 어렵다.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다)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 C은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3663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, 나머지 피고들은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, 2020. 10. 16.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,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. 다만, 피고 C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철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, 이 사건 청구는 피고 C이 상속한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어서 이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을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. 피고 C의 한정승인 주장은 특별한 법률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,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.

판사 백소영

별지